

#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

감사실 감사부

제정 2011.05.20. 규정 제172호

개정 2016.12.28. 규정 제311호

개정 2023.07.05. 규정 제48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3과 「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2.28.>

**제2조(적용범위)*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(이하 “선임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임무)** 선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 및 변경
2. 「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」 제·개정 심의·의결
3. 회계감사인 선임·평가기준, 방법, 절차 등의 결정
4. 기타 선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선임위원회는 상임감사와 「정관」 제7조제5항의 비상임이사 11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.

②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절차는 「이사회운영규정」 제 10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23.7.5.]

**제5조(운영)** ① 위원장은 선임위원회를 주재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선임위원회는 대면회의(영상회의 포함)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서면회의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·수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5.>

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5.>

**제6조(회계감사인 선임원칙 등)** ① 회계감사인은 심사평가원 및 심사평가원의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선임위원회는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(업무수행기간 3년이 끝난 경우도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개

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9조제1항의 사유로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1.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서류일체 및 선임위원회의 회의록 사본
2. 회계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서

④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시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선임방법 및 절차)**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이하 “G2B시스템”이라 한다) 등을 통하여 1주일 이상 공고하고, 입찰에 필요한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G2B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5.>

②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, 평가항목별 배점의 세부내역은 선임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.

③ 선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계감사인 선정 제안심의서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최고득 점자에 대하여 선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.

**제8조(회계감사계약)** ① 회계감사계약은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계약사무처리지침」에서 정한 계약 규정에 따라 체결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.

②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보 후 14일이

지난 이후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, 회계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.

⑤ 심사평가원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.

**제9조(회계감사인 변경 등)** ① 회계감사계약 기간에 규칙 제10조제1항 및 회계감사계약서에서 정한 회계감사인 변경·회계감사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8.>

②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고, 지체 없이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8.>

**제10조(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)**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계약 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를 회계감사계약서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
2. 내부감사업무의 대행

3.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
  4.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, 자본 그 밖의 권리 등(이하 이 호에서 “자산 등”이라 한다)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, 재무보고,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
- ③ 회계감사인이 용역 수행 중 회계감사계약을 임의로 중도해지할 수 없도록 회계감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선임위원회 위원의 의무)** 위원들은 학연·지연·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·타당하게 심의하여야 하며,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의2(선임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은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본인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, 본인과 직·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대상자는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·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사유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위원회 개최 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선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,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23.7.5.]

**제12조(간사)** ① 선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.

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선임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
2. 선임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·의결 결과 처리
3. 기타 선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13조(회의록 작성)** 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·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실제비용 지급)** ① 선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지급기준은 이사회에 준하여 책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임위원회가 이사회 등 비상임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와 같은 날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을 2분의1 감액한다.

[전문개정 2023.7.5.]

**제15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선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 <규정 제172호, 2011. 5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.

부 칙 <규정 제311호, 2016. 12. 28.>

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482호, 2023. 7. 5.>

이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제안서 평가기준

평가부문	평가항목	세부평가요소	배점
I.일반부문	1.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</li> <li>▪ 우리원 회계감사를 위한 핵심과약(법/제도 등) 및 수행방안 제시</li> </ul>	
	2. 유사분야실적 경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</li> <li>▪ 공공기관 컨설팅 수행실적</li> </ul>	
	3. 경영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재무구조</li> <li>▪ 최근 3년간 손해배상 현황</li> </ul>	
II.관리부문	1. 품질보증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회계감사기관의 품질보증 능력</li> <li>▪ 회계감사 관리방법론 적정성</li> </ul>	
	2. 사업수행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조직체계의 적정성</li> <li>▪ 참여인력의 적정성</li> </ul>	
	3. 일정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세부업무 구성의 적절성</li> <li>▪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</li> </ul>	
III.지원부문	1.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컨설팅 서비스(회계·세무·자금운용 등) 내용 적정성</li> <li>▪ 컨설팅 서비스 방법의 적정성</li> <li>▪ 추가 지원 서비스 사항</li> </ul>	
	2. 기밀보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</li> <li>▪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</li> </ul>	
IV.예산부문	1. 가격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요예산 책정의 적정성</li> </ul>	
합 계			

### ▷ 입찰가격(감사보수료) 평점산식

가)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* \text{평점} =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} \times \left( 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당해입찰가격}} \right)$$

\*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

\*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

\*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나)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* \text{평점} =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} \times \left( 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 가격}} \right) \\ + \left[ 2 \times \left( \frac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 가격} - \text{당해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 가격} - \text{추정가격의 60\%상당 가격}} \right) \right]$$

\*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

\*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

\*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다)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

[별지 제1호서식]

## 회계감사인선정 제안심의회서

◎ 제안업체 :

평 가 항 목		배점	평가결과(해당란에 "○")표시					가중치	점수
			A (5)	B (4)	C (3)	D (2)	E (1)		
일반부문	1.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								
	2. 유사분야 실적경험								
	3. 경영상태								
관리부문	4. 품질보증방안								
	5. 사업수행조직								
	6. 일정계획								
지원부문	7. 컨설팅								
	8. 기밀보안								
예산부문	9. 소요예산 책정의 적정성								
합 계									

평가자 의견	
총 점	
위와 같이 심의함.  위원 성명 : (인)	



## 제척·기피·회피 확인서

본인(위원 또는 해당 안건의 대상자)은 20○○년도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·의결에 있어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- 아 래 -

구분	사유	비고
제척	• 위원이 본인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·의결하는 경우	
	• 위원이 본인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	
기피	• 위원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	
회피	• 위원이 본인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·의결하는 경우	
	• 위원이 본인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	
	•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심의·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	
세부내용		

- 주) 1. 제척 및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고란에 “○” 표시(중복표시 가능), 없는 경우 미표시  
 2. 세부내용 : 제척, 기피 또는 회피관련 구체적인 내용 기재  
 3.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본 확인서와 함께 서면으로 소명 필요

20 . . . .

성명: (서명)

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위원장 귀하